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우 강 호위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재 무 과 장)	일 자	질의 : 2001년 12월 10일 답변 : 2001년 12월 10일
회 의	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예결특위		
<p>【 질의요지 】</p> <p>0 주민세 특별징수분 계상내용</p>			
<p>【 답변요지 】</p> <p>0 소득할 주민세란 국세인 소득세, 법인세,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세율은 국세납부세액의 10/100에 해당함</p> <p>0 주민세 특별징수분 이란 소득할 주민세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을 징수에 편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특별징수라함</p> <p>※ 주민세에서 특별징수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갑종근로소득, 사업소득, 배당소득, 이자소득등 <p>0 전년도까지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소득세할, 법인세할, 농지세할로 단순구분하여 당초예산시 편성하였으나, 금년부터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분하였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도소득세할 :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- 특별징수분 : 소득세중 특별징수방법에의한 주민세 - 소득세할 : 부과징수에 의한 주민세 			